

의안번호	2213699
의 퇴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5.10.24.
추 계 번호	25F5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수익자산 대체취득 시한 연장, 과세이연 허용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시 적용되는 과세이연 특례에 대해 대체취득 시한 변경 및 과세이연 허용 - 대체취득 시한: (현행) 1년 → (개정안) 2년 (유가증권은 1년) - 특례내용: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산입 → (개정안)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 확대 -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토지와 건축물로 국한 → (개정안)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할납부 특례에 대하여 특례요건 중 대체취득 시한을 변경하고, 분할납부가 아닌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유가증권을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추가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변동이 예상됨(안 제104조의16)
 - 현행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
 - 개정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에 유가증권을 추가하여 과세특례의 적

용범위를 확대

※ 현행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개정안은 동 특례의 요건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한을 연장하고,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의 내용을 과세이연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도별로 법인세수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대체취득 시한: (현행) 1년 → (개정안) 2년 (유가증권은 1년)
 - 특례내용: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정안)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대체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분할 익금산입하는 시점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대체취득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법인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연도별로 세수효과의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및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과 양도차익 등에 대해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양도차익과 처분시점을 예상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해당 특례의 실적은 연간 0.1~1억원 수준
- 개정안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가 유가증권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유가증권을 1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양도차익과 처분시점에 대한 예상도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함

[표 2]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실적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 실적	0.1	0.1	0.6	1	1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또한,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과세이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라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여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이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
 - 구체적으로, 양도차익의 계산, 기본재산의 종류별 과세이연 방법, 복수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할납부 특례에 대하여 특례요건 중 대체취득 시한을 변경하고, 분할납부가 아닌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유가증권을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추가함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